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6. 10.(수) 15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황규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0년 5월 29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·관리와 학생·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과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등(안 제5조)
-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·관리 등
(안 제6조, 안 제7조)
- 실태조사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도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
- 안 제5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 및 사용내역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
- 아울러, 안 제9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「학교보건법」 및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서 한 발 나아가, 응급처치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